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06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송재봉 · 복기왕 · 민형배
김태년 · 임미애 · 전종덕
박 정 · 남인순 · 김남희
이용선 · 박지혜 · 이연희
김우영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편집·인쇄·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출판의 육성·지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판(이하 “지역출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출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출판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를 “시장등에게”로 한다.

제16조의4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도서, 지역출판 및 지역출판사 활성화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③·④ (생략) <u><신설></u>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u>지역출판의 육성·지원</u>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u>제7조의3(지역출판 활성화 지원)</u>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판(이하 “지역출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출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1. <u>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u>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지역출판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출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
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
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출판 도서
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⑤ (생략)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0.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신고) ① -----

-----시장등에
게-----

-----.

-----.

1. 2.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도서, 지역출판 및 지역
출판사 활성화 지원

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
